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- 24호

「국민연금법」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「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4-6호, 2024. 1. 23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5년 2월 3일보건복지부장관

「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」

1.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

가. 하한액: 400천원

나. 상한액 : 6,370천원

2. 적용기간 : 2025년도 7월분부터 2026년도 6월분까지

부 칙

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